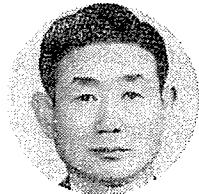


# 醫療法人에 대하여



가톨릭 의과대학 교수 조영선

今般 保健社會部는 2月 16日字로 새로운 醫療法을 非常國務會議의 議決을 거쳐 公布하였읍니다.

이 새 醫療法中에는 여러가지 從前의 法에는 없든 革新的인 內容이 包含되어 있습니다. 其中에서도 特히 第30條 第2項에 依據하면 “國家나 地方自治團體 또는 醫療業을 目的으로 設立된 醫療法人이 아니고는 病院을 開設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同法 附則 第5條에는 “이 法이 公布된 날로부터 6月 以內에 從前의 法에 依하여 開設許可 되었던 病院이라도 이 새운 法의 節次에 依하여 醫療法人을 設立하고 必要한 節次를 밟아야”되게 되어 있어 病院을 開設하고 있는 機關은 勿論 醫療業에 關心을 갖인 人士들의 至大한 關心을 集中시키고 있습니다.

醫療法人에 關聯된 醫療法 條項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醫療法人에 關聯된 醫療法條文”

**第30條 第2項 (醫療法人과 病院의 開設)** 醫師, 歯科醫師, 漢醫師, 助產員 또는 國家나 地方自治團體가 아니면 病院, 歯科病院, 漢病院 또는 助產所를 國家, 地方自治團體 또는 醫療業을 目的으로 設立된 法人 (以下 “醫療法人”이라 한다)이 아니면 綜合病院, 病院, 歯科病院, 漢方病院을 開設할 수 없다.

**第41條 (設立許可等)** ① 第30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醫療法人을 設立하고자 하는 者는 大領統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定款 其他 書類를 갖추어 保健社會部長官의 許可를 받어야

한다.

② 醫療法人은 그가 開設하는 醫療機關에 必要한 施設 또는 이에 所要되는 資金을 保有하여야 한다.

③ 醫療法人은 그 財產을 處分하거나 定款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保健社會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④ 이 法에 의한 醫療法人이 아니면 醫療法人 또는 이와 類似한 名稱을 使用할 수 없다.

**第42條 (附帶事業)** 醫療法人은 그가 開設하는 醫療機關에서 醫療業務를 行하는 外에 다음의 附帶事業을 할 수 있다.

1. 醫療人 및 醫療關係者의 養成 또는 補修教育의 實施
2. 醫療 또는 醫學에 關한 調査研究

**第43條 (實績報告)** 醫療法人은 每會計年度 終了後 2月 以內에 保健社會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그 運營實績을 保健社會部長官에게 報告하고 그 副本을 備置하여야 한다.

**第44條 (民法의 準用)** 醫療法人에 關하여는 이 法에 規定한 것을 除外하고는 民法中 財團法人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45條 (設立許可의 取消)** 保健社會部長官은 醫療法人이 다음 각號의 1에 該當할 때에는 그 設立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1. 定款으로 定한 事業以外의 事業을 할 때
2. 設立된 날로부터 2年以內에 醫療機關을 開設하지 아니한 때
3. 醫療法人이 開設한 醫療機關이 第51條의 規定에 의하여 開設許可가 取消된 때

4. 保健社會部長官이 監督上 發한 命令을 違反할 때

**第49條 (報告와 業務検査等)** ①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道知事는 醫療機關 또는 醫療人에 대하여 必要한 報告를 命令하거나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그 業務狀況 施設 또는 診療記錄簿 助產記錄簿 看護記錄簿等 關係書類를 檢查하게 하거나 關係人으로부터 陳述을 聽取하여 事實을 確認받게 할 수 있다. 이 境遇에 醫療人 또는 醫療機關은 이를 拒否하지 못한다.  
 ② 第1項의 경우에 關係公務員은 그 權限을證明하는 證票를 關係人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이 規定에 의한 報告에 關한 事項은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한다.

**附則 第5條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의하여 開設된 綜合病院, 病院, 齒科病院 또는 第31條의 規定에 該當하는 醫療機關(國公立醫療機關은 除外한다)은 이 法 施行日로 부터 6月內에 이 法의 節次에 따라 醫療法人의 設立 醫療機關의 開設許可 其他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上記 條文에 明示된 바와 같이 國公立病院을 除外한 各種 病院은 其種類如何를 不問하고 既得權을 一切 認定하지 않고 새로 醫療法人을 設立하고 開設許可를 받아야만 되게 되었습니다.

- 이 法에 依한 새로운 醫療法人을 設立하려면,
- 一定한 施設과 資金을 獨立的으로 保有하여야 하며
  - 財團法人 規程에 依據한 定款을 作成 保社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하며
  - 個人의 財產을 投資하였더라도 財產處分은 保社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하며
  - 每年 保社部令이 定하는 實績 報告書를 提出하고 業務監查를 받아야 한다.

### 醫療法人의 設立目的

保健社會部가 今般 醫療法人을 設立하게 하려는 目的是 다음의 세가지로 集約되었는 것으로思料됩니다. (이것은 本人의 推測임)

- 病院 開設을 許可制로 함으로서 病院의 都市集中 抑制

- 個人病院을 法人化함으로서 永續性을 갖게 하고

- 病院 收入에서 生起는 資產이 個人 또는 同財團의 醫療 아닌 事業에 投資되는 것을 防止한다.

以上 세가지가 主目的이었던 것 같으나 只今 問題視되는 것은 왜 모든 病院에 強制的으로 醫療法人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個人的 私有 財產權은 如何히 되는가.

또 왜 財團法人 規程을 適用 받는 醫療法人만을 固執하는가 하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 設立別 病院의 種類

只今 우리나라 病院을 設立別로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設立別	病院別	病院數	病床數
學校法人	醫大附屬	13	3,035
"	看護學校等	8	390
財團法人	一般	8	357
"	宗教	41	4,048
社團法人	公共	5	600
"	其他	16	932
商法上의法人	會社病院	12	491
個人病院	醫療業	134	4,880
小計	"	237	14,733
國公立病院	"	58	7,268
合計	"	295	22,001

### 大韓病院協會調查

以上과 같이 여러가지 病院이 있음니다마는 이 모든 病院이 獨立의in 財團法人 性格의 醫療法人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保健社會部에서는 아직까지 細則에 對한 어떤 公式的인 見解도 表明한 바가 없고 또한 이 大部分의 病院들이 大韓病院協會에 加入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病協自體에서도 性格이 다른 病院들이 모두 自己를 立場에서의 要求條件만을 내세우기 때문에 이 모든 病院들의 要求條件의 最大公約數만을 간추려 내야하니 爭자리當局에 提出할 建議事項을 찾어 내지 못하고 있는 實情입니다.

只今까지의 設立別로 본 病院들의 要望을 간

추려 보면 學校法人과 宗教財團法人的 病院은 現狀 그대로를 醫療法人으로 看做하여 줄 것을 要求하고 있으며 一般 財團法人病院은 此際에 醫療法人에게도 學校法人이 받고 있는 稅制面의 惠擇을 同等하게 줄 것을 要求하고 있고 個人病院은 小規模의인 것은 法人化하는 것을 免除케 하고 격여도 새로운 法에 依한 綜合病院 程度의 規模病院만을 醫療法人化하고 其代身 稅制面에 特惠를 附與하고 解產時의 個人이 投資한 部分은 還收할 수 있게 하는 法的措置가 이루워질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은 日本에서 適用되는 醫療法人을 說明하면 좀 더 醫療法人의 性格을 理解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日本 醫療法人的 境遇

日本에서 醫療法人을 만들게 된 動機는,

1. 病院의 永續化를 期하기 爲하여……個人이 病院을 經營하다 死亡乃至는 隱退를 하게 되면 그 病院을 引繼받는 者에게 高額의 相續稅가 賦課되어 病院을 繼續할 수 없는 境遇가 生겨 이것을 避하기 爲하여 永續性 있는 法人體를 構成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하여
2. 病院은 非營利機關이기는 하나 完全한 公益團體가 아니다. 病院의 醫療行爲는 非營利行爲이기 때문에 이것을 株式會社(營利法人團體)로 할 수도 有고 그렇다고 民法上의 公益團體를 만들게 되면 積極의인 社會公益을 追求해야 하는데 病院의 醫療行爲는 非營利이기는 하나 또한 積極的으로 公益을追求하는 團體는 아니기 때문에 特定한 法人體를 構成해야 할 必要 때문에

위와 같은 事由로 日本 厚生省에서는 醫療法을 改定하여 醫療法人 條項을 新設하게 되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必要를 느끼는 病院이 自意에 依하여 出願하여 만드려 지는 것입니다.

## 日本 醫療法人的 種類

### 1. 財團 醫療法人

이것은 寄附行爲로 出資하는 病院인 個人 또

는 法人(營利法人이든 公益法人이든)이 病院에 必要한 資產을 無償으로 寄附하여 設立되는 거의 公益化된 法人이다.

### 2. 社團 醫療法人

#### 1) 持分이 있는 社團法人

이것은 設立에 必要한 資產을 設立者들이 出資하는 形式으로 構成되기 때문에 經營에서 餘分이 生起し 中途에서 出資분을 還拂할 수도 있고 또 解散時에는 殘餘財產을 出資比率에 依하여 還收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2) 持分이 없는 社團法人

이것은 資產이 寄附로 이루어지는 社團法人인데 財團法人과 거의 같은 性格이다. 따라서 定款에는 解散時 殘餘財產은 國家 또는 公共團體 또는 同種의 醫療法人에게 寄附한다고 挿入되어야 許可된다.

### 3. 特定醫療法人

이것은 財團醫療法人 또는 持分이 없는 社團醫療法人에게만 許容되는 法人으로서 完全한 公益法人이다.

現在 日本에는 二千餘 醫療法人이 있으나 其中 61個病院만이 特定 醫療法人으로 登錄되어 있다.

特定 醫療法人이 되면 稅制上의 特惠를 받게 되며 讓渡所得稅 增與稅가 免除되고 또한 法人稅도 他法人이 28%~35%인데 이것은 25%로 되어 있다.

以上 日本의 醫療法人은 그 性格에 따라 法人形態를 選擇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必要한 條件(常時 3人以上的 醫師가 勤務할 수 있는 施設)을 具備하여 自意에 依하여 出願하여 만드려지는 것이 特徵입니다.

## 宗教 財團法人病院의 醫療法人化對時의 問題點

宗教財團에서 病院을 經營하는 主目的은 施療를 通하여 傳導를 하는데 目적이 있는 것으로 其中 몇몇 病院은 原財團의 支援이 없이도 自體收入으로 病院을 運營해 나갈 수도 있지만 大部

分의 病院은 原財團에서 財政的 利益 바침을 받아  
야만 病院運營이 可能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宗教財團病院이 分離되어 獨立의 医療法人病院으로 된다는 것은 分離自體가 宗敎事業 目的에서도 問題가 되며 또한 病院 運營面에서도 높은 問題點을 內包하고 있습니다.

今般 이 問題點을 解決하기 為하여 가톨릭 病院協會長 名義로 下記와 같은 請願書를 關係當局에 提出하였고 또한 關係當局者들로부터 好意의 反應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即, 宗教財團法人으로 登錄된 宗敎團體가 經營하는 病院에 對하여는 別途로 分離하여 醫療

法人을 設立하지 않아도 改定 醫療法에 依한 醫療法人으로 看做 處理하여 줄 것을 請願書 内容에 明示한 理由를 드려 請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問題는 앞으로 保健 社會部가 마련한 施行令 및 施行細則으로는 醫療法乃至는 稅制關係法令의 改正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解決될 수 없는 問題點도 內包되어 있어 우리는 앞으로 繼續 醫療法人 問題에 對하여 關心을 갖고 注視하고 繼續 事態發展이 宗敎關係病院 設立目的에 違背되지 않게끔 必要한 努力を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1973년도 ◆

### 추계 「세미나」

1973년도 본 협회 추계 세미나를 다음과 같이 갖기로 하였습니다.

일 시 : 1973년 10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

장 소 : 유성 관광 호텔(충남 대전)

#### 제 1부 주제 발표 「보건교육」

- ① 예방의 학면에서의 보건교육 ..... 정 규철 교수 (가톨릭 의대)
- ② 임상면에서의 보건교육 ..... 전 종희 교수 (가톨릭 의대)
- ③ 지역사회학면에서의 보건교육 ..... 김 명호 교수 (연 세 의대)

#### 제 2부 보고 및 토의

- ① 아시아 병기독교 보건활동 참가 보고 ..... 김 재호 부교수 (성모병원)
- ② 에티오피아의 나사업현황 보고 ..... 최 시룡 교수 (CMC 사의처장)
- ③ 종합 토의

1973년 9월

한국 가톨릭 병원 협회장 유 수 철